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핵심자원 등의 구매·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특례〉
■ 유용원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56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8
1. 핵심자원의 국가별 의존도 및 수입의존도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유용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14.
3. 회부연월일 : 2024. 8.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위기대응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여 마련된 것임.

그런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방위협정을 체결하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축에 대한 국제적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세계 우라늄 농축시설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핵심자원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국가 안전보장은 물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핵심자원인 우라늄 등에 대한 공급원 다변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필요시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유사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 구매 및 조달에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4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공공급기관의 장이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196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196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핵심자원 등의 구매 등에 관한 특례) ① 공공공급기관의 장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계약절차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를 거쳐 핵심자원 또는 그 대체자원·물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4조(핵심자원 등의 구매 등에 관한 특례) ①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정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 -----대상, 방법 및 절차----- ----- -----.

현행법 제34조는 공공공급기관¹⁾의 장이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²⁾ 등 계약절차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자원안보협의회³⁾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 또는 대체 자원·물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핵심자원 등의 구매·공급에 관한 계약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공공공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6조(자원안보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① 자원안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예산·자금·인력 등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 전략·정책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평가 및 제11조에 따른 공급망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4. 핵심자원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핵심자원의 비축의무 및 제16조에 따른 비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시책에 관한 사항

7. 제21조에 따른 핵심공급기관의 지정·관리·해제에 관한 사항

8. 제22조에 따른 핵심수요기관의 지정·관리·해제에 관한 사항

9.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장은 자원안보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면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 법률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그런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방위협정 체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우라늄 공급에 대한 국제적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우라늄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핵심자원⁴⁾의 수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구매·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신

4) 핵심자원의 국가별 의존도 및 수입의존도는 참고자료 참조

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원안보위기 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절차 관계 법령의 적용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핵심자원의 구매·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원안보위기 시 핵심자원의 신속한 확보 및 공급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달청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핵심자원을 직접 구매하고 있으므로 자원안보위기 시 핵심자원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도 핵심자원의 구매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자원안보위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를 통해 핵심자원의 신속한 구매·조달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임.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 핵심자원의 구매·공급에 관한 특례계약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공공공급기관의 장으로 하고, 적용배제 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는 안이 발의되었는데⁵⁾,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핵심자원의 구매에 필요한 계약을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므로, 핵심자원의 특례계약 주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제외하고 적용배제 법률에서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457

5)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17037호) 및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20534호)

※ 참고자료

1. 핵심자원의 국가별 의존도 및 수입의존도⁶⁾

□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구분	석유(원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국가별 수입비중	사우디	33%	호주	25%	호주	38%	영국	39%
	미국	14%	카타르	20%	러시아	22%	러시아	31%
	UAE	11%	오만	12%	인도네시아	13%	프랑스	30%
	쿠웨이트	10%	미국	11%	캐나다	9%	-	-
	이라크	8%	말련	11%	남아공	6%	-	-
	카타르	6%	인니	5%	콜롬비아	4%	-	-
	카자흐스탄	4%	러시아	3%	미국	4%	-	-
	멕시코	3%	파푸아 뉴기니	2%	모잠비크	2%	-	-
총 수입 의존도	100%		100%		확인불가		100%	

* 2023년 기준, 수입비중은 도입금액 기준

□ 핵심광물 33종 중 10대 전략광물 국가별 수입비중

구분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5종)	
국가별 수입비중	중국	59%	뉴칼레 도니아	61%	콩고	25%	남아 공	40%	중국	97%	중국	54%
	칠레	37%	핀란드	20%	중국	16%	호주	38%	미국	1%	일본	21%
	아르헨 티나	1%	중국	5%	일본	11%	일본	16%	독일	1%	프랑스	10%
	미국	1%	과테 말라	3%	마다가 스카르	7%	중국	4%	일본	1%	대만	8%
	영국	1%	남아공	3%	미국	7%	가봉	2%	-	-	미국	4%
총 수입 의존도	99%		99%		76%		100%		99%		99%	

* 2023년 기준, 수입비중은 도입금액 기준

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